

0011. 이사회추천위원회 규정

2008. 03. 05 제정
2009. 03. 04 개정
2012. 03. 21 개정
2019. 09. 25 개정
2023. 05. 02 개정
2026. 03. 26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OCI 홀딩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회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63조의2, 제542조의6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독립이사여야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다만,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일 전일까지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이사(독립이사 포함)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
- ② 이사회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
제9조의2 (이사 후보의 선정)

위원회는 이사 후보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- ①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(전문분야, 성별)
- ②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(독립이사 구성비)
- ③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(최근 5년 이내 횡령·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 유무,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유무 등)
- ④ 상법 제382조, 제542조의8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

제9조의3 (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선정)

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선정 시 상법 제542조의11, 제542조의12 등 관련

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 또는 이사 후보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 (이사 및 감사위원회 후보 선정 기한)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모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예비 후보 추천을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,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확정을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제안으로 후보 추천이 있는 경우, 제1항의 일정과 무관하게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.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3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
- ② 간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원 부서 담당 임원 또는 담당 부서장이 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독립이사 명칭 관련 규정(제4조, 제9조, 제9조의2)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